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교육  
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584
----------	-----

2024. 6. 24.(월)  
교육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자: 김현문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: 2024년 5월 30일

다. 회부일자: 2024년 5월 31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6월 11일

(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김현문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○ 학교 학부모회 운영 및 학부모교육의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을 비롯해 연 2회 이상의 학부모교육 지원 등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지원 강화를 통해 건강한 교육공동체 및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‘학부모교육’의 정의를 변경하고, ‘학교참여’의 정의를 신설함 (안 제2조)
- 학부모회 및 학부모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(안 제3조)
-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지원을 포함하는 등 학부모회 기능의 내용을 수정함 (안 제6조)
- 연 2회 이상의 학부모교육 및 교육정책 이해 교육 지원 등 교육 지원 사항을 명시함(안 제20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신원호)

### 가. 조례 제정 이유

- 지난 해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건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 추락 논란에 불을 지폈고 이후, 교육의 3대 주체인 ‘교사, 학생, 학부모’ 간 불신 및 상호 소통 부족은 교육 현장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큰 문제로 대두되었음.
- 이에, 교육부 등 정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‘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’을 수립·발표했으며 ‘교권 강화’가 주요 골자인 **교권회복 5법**<sup>18)</sup>이 개정됨.

18) 「교원지위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, 「교육기본법」 「학교폭력예방법」의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.  
· 개정안 주요 골자 : △ **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악성 민원 포함** △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 보장 △ 보호자의 정당한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협조 등

○ 하지만, 관련법 개정과 후속 조치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교사들은 학교 근무 여건이 개선되거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,<sup>19)</sup>

특히, 최근 1년 간 ‘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’ 고 응답한 교사가 57%, 학생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답한 경우도 53.7%로 나타남.

○ 이에 따라, ‘교권 강화’ 등 학교 교육현장의 건강성 회복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교육주체인 학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커졌고, 지난 4월 교육부는 학부모정책의 개선 방향과 주요 사업 등을 담은 ‘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’ 를 발표함.

### 【 정부 학부모정책 향후 추진 방향 】

<b>비전 목표</b>	가정과 학교의 행복한 동행, 건강하게 성장하는 학생 교육주체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한 최선의 학생교육 실현	
<b>추진방향</b>	<b>추진과제</b>	<b>달라지는 모습</b>
<b>①</b> <b>(정책목표)</b> <b>정책</b> <b>공감대</b> <b>형성</b>	①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목표 공유 <b>신규</b> ② ‘함께학교’ 캠페인 시행 <b>신규</b> ③ ‘대한민국 학부모상’ 제정 <b>신규</b>	→ 일관된 정책목표 하에 효과적으로 추진되는 학부모정책
<b>②-①</b> <b>(교육)</b> <b>학부모의</b> <b>자녀교육</b> <b>역량 강화</b>	④ 생애주기별 교육과정 및 가이드북 개발 <b>신규</b> ⑤ 온라인 학부모교육 개편 <b>강화</b> <b>신규</b> ⑥ 대학생 대상 예비 학부모교육 추진 <b>신규</b> ⑦ 학부모상담 확대 및 체계화 <b>강화</b>	→ 올바른 가정교육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자녀

19) 교사노조, 전국 교원 11,359명 대상 ‘교원 인식 설문 조사’ 실시 (24. 4.15. ~ 4. 26.)  
 - 교사 78%, “교권회복 관련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근무여건 좋아지지 않았다”

<p>②-② (참여)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참여 지원</p>	<p>⑧ 학부모의 학교참여 기반 마련 <b>강화</b> ⑨ 예비교원-현직교원-학교 관리자 연수 실시 <b>강화</b> ⑩ 학부모 활동 우수사례 확산</p>	<p>→ 학부모의 참여를 통해 개선되는 학교</p>
<p>②-③ (소통) 교육 3주체 간 소통 활성화</p>	<p>⑪ 디지털 소통 플랫폼 '함께학교' 운영 <b>강화</b> ⑫ 교육 3주체 대상 '함께 차담회' 운영 <b>강화</b> ⑬ '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', '학부모 정책 모니터단' 운영 <b>강화</b></p>	<p>→ 소통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교육공동체</p>
<p>③ (정책기반) 학부모 지원체계 정비</p>	<p>⑭ 근거법령 제정 추진 <b>신규</b> ⑮ 정책연구 및 통계 정비 <b>신규</b> ⑯ 조직 및 예산 정비 <b>강화</b></p>	<p>→ 든든한 기반 위에 내실 있게 시행되는 학부모정책</p>

자료출처: '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' (교육부, 24.4.30.)

○ 특히, 교육부는 이번 정책의 목표를 그동안 학교교육의 '수요자'로서 학부모의 참여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, 가정교육의 '공급자' 및 학교교육의 '협력자'로서의 책무성 강화에 두고 이를 위해 **학부모의 건전한 학교참여 및 자녀교육 역량강화**를 위한 **학부모교육 지원** 관련 제도개선과 사업 추진에 두고 있음.

○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맞춰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참여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건강한 교육공동체 및 학교교육 발전의 토대 마련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그 개정 의의와 취지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.

## 나.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

○ 안 제1조(목적)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중 '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' 부분을 '학부모의 건전한 학교참여'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학부모정책 추진 방향에 맞춰 '건전한 학부모회 운영'으로 변경하였음.

○ 안 제2조(정의)에서는 ‘학교참여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,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가 교육주체로서 학교교육과 관련한 역할을 보다 명확히 담아 학교현장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근거를 강화하였음.

○ 본 개정안에서 신설한 안 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)에는 교육감이 학부모회 및 학부모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, 기본계획에는 지원계획의 기본 방향 및 목표와 학부모회 및 학부모교육 관련 지원 사업, 예산 확보 등 지원 방법과 홍보 방안,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도록 규정하였음.

이를 통해, 학부모회 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학교참여 및 교육 효과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○ 한편, 안 제6조(기능)에서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학부모회의 기능 가운데 ‘학부모 동아리·자원봉사 활동 등 건전한 학교참여 지원’을 제2호에 규정하였고, 제3호에서 학부모교육 활성화 지원 기능을 ‘학부모로서의 역량강화 및 자녀와의 소통과 이해 증진’으로 변경하여 그 의미와 범위를 확대하였음.

특히, 제4호에서는 기존에 ‘충북교육공동체현장 학교 안착 활동 지원’으로 규정했던 학부모회의 기능을 ‘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지원’으로 변경하였음. ‘학교문화 책임규약<sup>20)</sup>’은 학생·교사·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소통과

---

20) 학교문화 책임규약 : 학생-교사-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과 책임을 확인하고, 폭력 없는 학교문화 만들기 위해 실천을 약속하는 규약

· (교육부) 2024.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이드북 안내(2.23.)

· (충북교육청) 2024. 「학교문화 책임규약」 운영 안내 - 2024. 학생 생활교육 기본 계획(2024. 1. 11.)

※ 충북교육청, 학교문화 책임규약 우수학교 추진 계획  
- 초·중·고 특수학교 50교 지원, 교당 2,000천원 지원

협력을 통해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약속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 
각급 학교 여건에 맞춰 추진토록 해, 구성원 간 인식 제고 및 참여  
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- 이 밖에 안 제5조 중 “다음에 “학부모회” ” 를 “다음에 “학부모회” ” 로,  
안 제12조 중 “1이상” 을 “ 1 이상” 으로, 안 제14조제5항 중  
“대의원회의” 를 “대의원회 회의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각 호외의  
부분 중 “홈페이지” 를 “누리집” 으로 수정하는 등 조문 내용  
가운데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와  
한글 표현 사용 등을 위해 정비하였음.

#### 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학교 학부모회 운영 및 학부모교육의  
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을 비롯해 연 2회 이상의 학부모교육  
지원 등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참여 지원을 통해 건강한 교육  
공동체 및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.  
이를 통해,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참여를 활성화하고 자녀교육  
역량 강화를 통한 학부모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교권과 학교교육의  
건강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, 그 취지와 필요  
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도교육청은 지원 및 추진사업들이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참여와  
학부모교육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제도 개선 및 정책추진 방향  
및 속도를 같이 하여 각급 학교별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 
및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○ 그 밖에, 조례의 조문별 검토에서는 전체적으로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 측면에서 「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」 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 을 준수하여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,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 전체적으로 입법절차를 준수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요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○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 
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 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효율적인” 을 “건전한” 으로 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학부모의” 를 “학부모로서의” 로, “교육활동  
참여” 를 “건전한 학교참여” 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 
같이 신설한다.

7. “학교참여”란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가 학교교육 운영에 관한  
다음 각 목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학교교육 모니터링

나.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

다. 학부모교육

라.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관련 각종 활동

제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.

제16조를 삭제한다.

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22조 및 제23조로 하고, 제17조를 제21조로

하며,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, 제3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)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부모회 및 학부모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.

1. 기본 방향 및 목표
2. 학부모회 및 학부모교육 지원 사업
3. 예산 확보 및 지원 방법
4. 홍보 추진 방안
5. 협력체계 구축
6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0조(학부모의 학교참여 및 교육 지원) 교육감은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참여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건전한 학부모 학교참여 및 학부모교육에 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
2. 학교 학부모회 활동 지원
3.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정책 이해 교육 지원
4.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 2회 이상의 학부모교육 지원
5. 다양한 학부모교육 교육프로그램 지원
6. 그 밖에 건전한 학부모 학교참여 및 학부모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

제4조(종전의 제3조) 중 “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”을 “교육감”으로 한다.

제5조(중전의 제4조) 중 “다음에 “학부모회” ” 를 “다음에 “학부모회” ” 로 한다.

제6조(중전의 제5조)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학부모 동아리·자원봉사 활동 등 건전한 학교참여 지원
3. 학부모로서의 역량강화 및 자녀와의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한 학부모 교육 활성화 지원
4.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지원
5. 학부모교육 참여 및 교육기회 제공 위한 비영리 교육 사업

제11조(중전의 제10조) 중 “규정이” 를 “규정으로” 로 한다.

제12조(중전의 제11조)제3항 중 “1이상” 을 “1 이상” 으로 한다.

제13조(중전의 제12조)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 제4호” 를 “제1항제4호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3조제1호” 를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” 로 한다.

2. 해당 학교학부모회 규정의 제정·개정

제14조(중전의 제13조)제5항 중 “대의원회의” 를 “대의원회 회의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홈페이지” 를 “누리집” 으로 한다.

제21조(중전의 제17조) 중 “학부모 교육활동” 을 “학부모교육 활성화” 로 한다.

제23조(중전의 제22조)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규칙” 을 “교육규칙” 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<u>효율적인</u>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,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 참여와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“학부모교육”이란 <u>학부모의</u> 역할 수행과 <u>교육활동 참여</u>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건전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<u>학부모로서</u> 의 ----- <u>건전한 학교참여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7. “<u>학교참여</u>”란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가 학교교육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가. <u>학교교육 모니터링</u></p> <p>나. <u>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</u></p> <p>다. <u>학부모교육</u></p> <p>라.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</p>

<신 설>

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 
관련 각종 활동

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) 충청북도  
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  
다)은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참  
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  
을 포함하는 학부모회 및 학부  
모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 
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 
매년 수립해야 한다.

1. 기본 방향 및 목표
2. 학부모회 및 학부모교육 지  
원 사업
3. 예산 확보 및 지원 방법
4. 홍보 추진 방안
5. 협력체계 구축
6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  
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학부모회의 설치) 충청북도  
교육감(이하“교육감”이라 한다)  
이 관할하는 공립학교에 학부모  
회를 두고, 사립학교의 경우에  
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 
학교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조(학부모회의 명칭) 학부모회  
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 
다음에 “학부모회”를 붙여 표시

제4조(학부모회의 설치) 교육감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5조(학부모회의 명칭) -----  
-----  
다음에 “학부모회”-----

한다.

제5조(기능)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(생략)
2.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·지원
3.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
4. 충북교육공동체현장 학교안착 활동 지원
5.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

제6조 ~ 제9조 (생략)

제10조(학부모회의 조직)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,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, 학년별 학부모회, 학급별 학부모회,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.

제11조(총회) ①·② (생략)

-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

----

제6조(기능) -----
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학부모 동아리·자원봉사 활동 등 건전한 학교참여 지원
3. 학부모로서의 역량강화 및 자녀와의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한 학부모교육 활성화 지원
4.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지원
5. 학부모교육 참여 및 교육기회 제공 위한 비영리 교육사업

제7조 ~ 제10조 (현행 제6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)

제11조(학부모회의 조직) -----

-----  
----- 규정으로 -----  
-----  
-----.

제12조(총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- ③ -----  
-----  
-- 1 이상-----

집한다.

④·⑤ (생략)

제12조(총회 의결사항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(생략)

2.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·개정

3. ~ 5. (생략)

② 학부모회 회장은 제1항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신,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.

제13조(대의원회) ① ~ ④ (생략)

⑤ 대의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

-----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총회 의결사항) ① -----
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해당 학교학부모회 규정의 제정·개정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제1항제4호-  
-----  
-----.

③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14조(대의원회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대의원회 회의-----  
-----  
-----.

⑥ -----  
----- 누리집 -----

해 알려야 한다.

1.·2. (생략)

제14조·제15조 (생략)

제16조(교육활동 지원 사업) 교육

감은 학부모교육활동 지원을 위  
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 
할 수 있다.

1. 학부모 학교교육활동 참여를  
위한 지원 사업
2.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 
학부모교육 사업
3. 그 밖에 학부모교육활동 지  
원에 필요한 사업

제17조(학부모성장지원센터 운영)

교육감은 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와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의  
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  
을 위하여 학부모성장지원센터  
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, 이에  
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 
정한다.

<신설>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제15조·제16조 (현행 제14조 및  
제15조와 같음)

<삭제>

제21조(학부모성장지원센터 운영)

-----  
--- 학부모교육 활성화 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20조(학부모의 학교참여 및 교  
육 지원) 교육감은 학부모의 건  
전한 학교참여와 학부모교육 활  
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  
원을 할 수 있다.

제18조 ~ 제20조 (생략)

제21조 (생략)

제2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1. 건전한 학부모 학교참여 및 학부모교육에 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

2. 학교 학부모회 활동 지원

3.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정책 이해 교육 지원

4.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 2회 이상의 학부모교육 지원

5. 다양한 학부모교육 교육프로그램 지원

6. 그 밖에 건전한 학부모 학교참여 및 학부모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

제17조 ~ 제19조 (현행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)

제22조 (현행 제21조와 같음)

제23조(시행규칙) -----  
----- 교육  
규칙-----.

# 관계 법령

## □ 교육기본법

[시행 2023. 9. 27.] [법률 제19736호, 2023. 9. 27., 일부개정]

**제5조(교육의 자주성 등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,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, 교직원·학생·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보호자)**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.

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,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·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9. 27.>

**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 
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**1. 재정수반요인**

-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8조(재정지원 및 회비모금 금지)
- 학교운영기본경비를 통하여 단위학교별 자율적 편성 운영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- 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  
※ 조례 제정과 별도로 이미 예산 지원하고 있음

**3. 미첨부 사유**

- 이 조례안은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건전한 학부모회 운영 및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이미 지원(학교별 본예산 편성)하고 있음  
※ 학부모회 예산 현황

연도	학교수(교)	학부모회 구성(교)	학교별 평균 예산(천원)	비고
2023	481	481	2,468	
2024	483	483	2,324	